

#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10.11(금)

산 업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3. 9.12

나. 제안자 : 윤재상, 허인환, 이한구, 김영분, 김정현, 안병배, 조영홍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3. 9.12

라. 상정일자 : 2013.10. 1(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윤재상 의원
- 검토보고 :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희
- 심사내용 : 질의 및 토론
-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어촌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전문성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구성인원 보강과
-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자조건에 대한 일부조문을 조정하고
- 그 밖에 불합리한 용어 등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### 나. 주요골자

-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위원 대상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을 추가함.  
(안 제7조)

- 농어업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함.(안 제1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임.
  -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『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』의 위촉 위원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였고,
  - 융자금을 기금 운용 여건에 맞게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자금은 현행대로 하고 시설자금은 1농어가당 1억원 이내,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로 물가상승 및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며,
  - 또한, 일부 용어 등을 법령정비 기준<sup>1)</sup>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됨.
-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3. 9.14 ~ 9.27(14일간)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운영위원회 위촉 위원이 9명이었지만 민간 전문인이 부족했기에 짝수인 12명으로 위촉을 해도 문제점이 없는지?
  - ⇒ 위원회 인원은 12명~15명이 적정한 관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1) 알기 쉬운 자치입법 길잡이 - 2010. 6.28 인천광역시 발행

- 시설자금을 3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?  
⇒ 타시도 사례 비교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였음.

## 5. 회의결과 - 원안가결

## 6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허인환·이한구·윤재상·안병배·조영홍 의원
- 나. 반 대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5명 찬성 : 5명)

## 8. 기타 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: 1.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. 끝.

##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인정하는 때”를 “인정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위원회의 구성)”을 “(위원회의 구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8명”을 “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호선하며”를 “선출하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유관기관 임·직원”을 “유관 기관 임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4.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원

제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 본문 중 “신청하며, 군수·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 제출하고,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.”를 “용자신청서를 제출한다.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·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적격자에 한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장에 제출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용자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

의를 마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 다만,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용자금의 지원한도는”을 “용자금 중 운영자금은”으로, “지원한다.”를 “하고, 시설자금은 1농어가당 1억원 이내,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6호 중 “관계기관에 허위자료”를 “관계 기관에 거짓자료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본문 중 “농어촌업무 담당국장으로”를 “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하고, 분임기금운용관은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며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증빙서류”를 “증명서류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시금고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유통과장, 수산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농어촌 업무관련 <u>유관기관 임·직원</u></p>	<p>제6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인정하는 경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선출하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유관 기관 임직원</u></p>

2.·3. (생략)

<신설>

④ ~ ⑥ (생략)

<신설>

제10조(대상자 선정) 용자를 지원받  
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  
체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·구  
청장에게 신청하며, 군수·구청  
장은 적격여부를 검토 후 적격자  
에 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시  
장에게 제출하고, 시장은 위원회  
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  
정한다. 다만, 시장은 사업의 성  
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 
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용자  
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<신설>

<신설>

2.·3. (현행과 같음)

4.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위  
원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
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 
한다.

제10조(대상자 선정) 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용자신청서를 제출  
한다. <단서 삭제>

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  
·구청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 
적격자에 한정하여 우선순위를 정  
한 뒤 시장에게 제출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 
용자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  
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대상자를

제11조(용자조건 및 방법) ① 용자  
금의 지원한도는 1농어가당 5천만  
원 이내, 생산자단체는 2억원 이  
내로 지원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3조(용자금의 회수) ① 시장은  
용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 
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  
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  
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
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  
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  
우

② (생략)

제16조(회계공무원) ① (생략)

② 기금운용관은 농어촌업무 담당

선정한다. 다만, 제1항 및 제2항  
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  
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 
서를 직접 접수하여 지원대상자를  
선정할 수 있다.

제11조(용자조건 및 방법) ① 용자  
금 중 운영자금은 -----  
-----  
----- 하고, 시설자금은 1농어가  
당 1억원 이내, 생산자단체는 3억  
원 이내로 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용자금의 회수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관계 기관에 거짓자료-----  
-----  
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  
음)

② ----- 경제수도추진본



국장으로, 기금출납원은 농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 다만,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자육성사업은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, 분임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, 분임기금출납원은 주무담당 농촌지도사로 한다.

③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부장으로 하고, 분임기금운용관은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하며-----  
-----  
----- . <단서 삭제>

③ -----  
----- 증명서류-----  
----- .